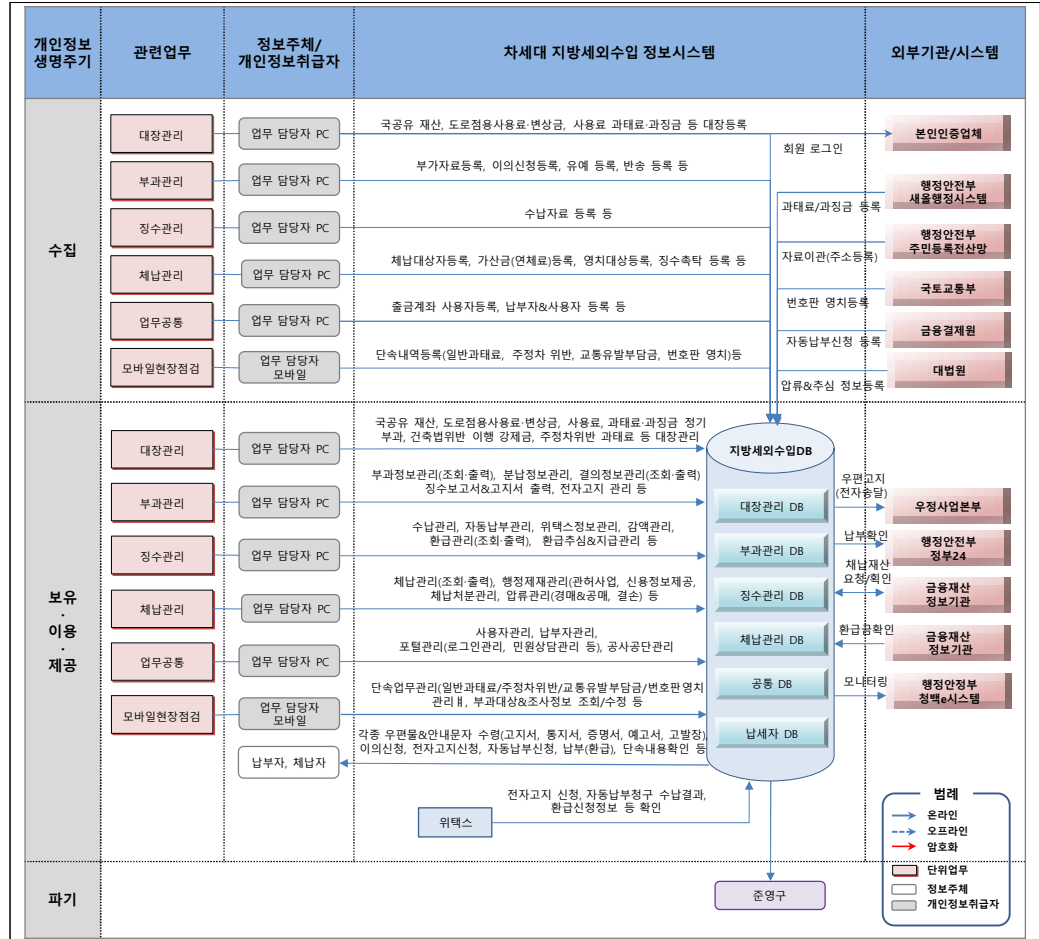


	운용체계 변경내용	해당하지 않음			
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세외수입) 감액관리	15,735건	주민등록번호,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메일	국토교통부	세외수입 감액관리
	(세외수입) 결손관리	24,639건	주민등록번호(체납자), 성명(체 납자)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결손관리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3,571건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예금주정보(계좌번호, 예금주명)	금융결제원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세외수입) 부과관리	156,964건	주민등록번호,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OCR 납부번호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세외수입 부과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135,915건	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 인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세외수입 수납처리
	(세외수입) 압류관리	38,839건	채무자(제3채무자) 정보(성명, 주소), 채권자(체납자) 정보(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성명(체납자), 납부자번호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입 금(가상)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입 금(가상)계좌번호, 입금계좌예금 주 주민(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여신금융협회, 대법원, 건설공제조합, 한국자산관리 공사, PG사, 국세청,관세청, 한국신용 정보원	세외수입 압류관리
	(세외수입) 체납관리	75,343건	차량 영치정보 (영치차량번호, 영치주소, 소유자명, 법인대표자 명, 번호판수령자, 번호판수령자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체납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을 위해국 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 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 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체			

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검사/점검관리 (건설기계), 의무보험미가입자관리,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납부자대장”은 DB에서 삭제하지 않으며, 보존기간이 10년인 “목적외사용승인파일, 하천점용허가”은 보존기간 경과시 파기함.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 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3장)의 8개 항목 제외
-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5개 항목 제외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보조저장매체로 전달할 때 안전한 암호화 적용(4.3.2) : 보조저장매체로 전달할 때 파일 자체를 암호화하거나 비밀번호 설정 기능 적용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해당없음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조치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제공, 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분야,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 다만, 보조저장매체로 전달할 때 파일 자체를 암호화하거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미흡한 사항으로 도출되었음.

	•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
--	---